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20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조승환·김성원·서일준

이종배 · 김태호 · 김승수

이성권 • 안철수 • 유용원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법률 제 호

감면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12(제121조의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2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6(인구감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중소기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감면대상사업장을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 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한다.
-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

121조의3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장의12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u> <신 설></u>	제121조의36(인구감소지역의 창
	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
	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 2027
	<u>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
	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중소기
	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
	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
	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급단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 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 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 라 한다)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 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

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
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 등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 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 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감면대상사업장을 인구감소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 ③ (생략)
-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 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 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 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 <u>제2항</u>-----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 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건명수에는 건명하여 작용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 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1제2

 (5)
 (5)

항, 제121조의22제2항, <u>제121조</u> 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 ① (생 략)

<u>제</u>
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
<u> 2</u> 항
⑥ ~ ① (현행과 같음)